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보도자료  
2014. 8. 12.(화)

공보담당관 지정장 오영신

PROSECUTION SERVICE  
전화 033-371-4301/팩스 033-371-4564

자료문의 : 지청장실  
전화번호 : 033-371-4301  
주최인자 : 지청장 오영신

### 제 목 태백 열차 충돌사고 수사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지청장 오영신)은 2014. 7. 22. 태백역-문곡역 구간(단선)에서 발생한 열차 정면충돌사고(사망자 1명, 중경상자 93명)를 수사하여,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사용하고, 적색신호기·자동 정지장치·관제사의 무전교신 일체를 무시한 채 열차를 운행한 O-train 관광열차 기관사를 구속기소하였음

#### 1 사건 개요

##### ① 피고인

● A○○(구속, 48세, O-train 기관사, 경력 23년)

##### ② 공소사실 요지

● 2014. 7. 22. 17:49경 피고인은 승객 43명을 태우고 운행중이던 O-train 관광열차를 문곡역에 정차시키고, 태백역에서 문곡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무궁화호(승객 67명)와 교행하여야 할에도,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 편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정차없이 통과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주오던 무궁화호와 정면 충돌함으로써 총 94명의 사상자(사망 1명) 및 예상액 42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약 13시간 46분간 태백선 기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

##### ③ 수사경과

- 7. 22. 충돌사고 발생 직후 영월지청 검사를 현장에 보내어 사고원인 관련 신속한 증거수집지휘
- 영월지청장을 팀장 겸 주임검사로 한 수사팀을 편성(철도사고 수사 경험 있는 대구지검 검사 1명, 춘천지검 본청 검사 2명이 수사지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열차운행정보, 전자연동장치, 무전교신 등 증거관계 수집·분석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명백히 하여 사고 일주일 후인 7. 29. 피고인 구속
- 8. 12. 피고인 구속기소

#### 2 수사 결과

##### 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매우 위중한 점을 확인

- 피고인은 열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반 안전장치(관제사의 무전교신, 신호기,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를 모두 무시하고 열차를 운행하여 정면 충돌사고에 이르렀음을 확인
- 태백편제원의 “문곡역 교행”이라는 무전교신 및 적색 신호기를 모두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신호기가 적색인 경우 작동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을 확인하고도 신호기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였으며, 문곡역 통과시 무궁화호의 교행을 위해 자동전환된 선로전환기를 피순하였음
- 피고인은 ‘무궁화호 열차가 지연된다’는 무전교신을 듣고 태백역에서 교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① 무궁화호 열차가 지연된다는 무전교신 자체가 없었고, ② 문곡역 교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호기·자동정지장치 등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

## ② 피고인의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사용사실 확인

- 한국철도공사 내부규정은 기관사들의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열차운행 중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여 왔음

※ 피고인의 2014년 1월부터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총 191회의 열차운행 근무 가운데 134회의 운행 중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 등 휴대폰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됨

- 피고인은 사고당일에도 17:35경 열차에 승무하여 운행 중, 1인 승무원에도 불구하고 '키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함(최종 발신 시각 17:43, 사고 6분전)

※ 피고인은 열차 운행 도중 오른손으로는 운전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였다고 진술

- 키카오톡 최종 발신 이후에도 사고시까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켜놓은 사실 확인(휴대폰의 데이터 사용내역)

## ③ 무궁화호 기관사, 관제센터의 피실은 인정되지 않음

- 전기연동장치,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 유무선 교신 내역을 확보, 분석하여 신호기 및 자동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실을 확인함
- 무궁화호 기관사, 구로 및 테백관제사 모두 규정을 준수하였고, 이상 징후 포착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정지'하도록 무전 교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됨

## 3 이 사건 수사의 의미

### ①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본 건과 같은 정면 충돌사고는 매우 드물고, 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열차의 특성상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고원인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업무상과실이 위중한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형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업무 담당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반 장치들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음이 확인된 사건으로, 안전업무 담당자의 안전수칙 준수 중요성이 부각된 사안임

## ② 검찰의 수사경험 및 역량을 총동원하고, 철도특사경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고원인 및 책임자 규명

- 대구역 철도사고 수사경험 있는 대구지검 검사 1명이 수사팀에 합류하여 초동수사부터 사고원인 규명 및 증거수집에 추후의 의문점도 남기지 않도록 하였고,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무전교신분석), 춘천지검 본청(신경정신분석 의뢰자문지원) 등 검찰의 다양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에 만전을 기하였음

- 철도사고 수사경험 및 철도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철도특사경과 초동수사부터 협조하여 제반사항을 실시간 지원함으로써 열차운행 정보기록장치, 전자연동장치, 무선교신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열차기관사의 운행 중 휴대폰사용금지의 제도적 강제방안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 제도개선의견 제출 예정. 끝.



#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24.

사건번호 2013년 형제 [redacted]

수신자 의정부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오세문 오세문 [redacted]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사건번호	39호
배당순위 번호	
단독	단독
합의부	부

## I. 피고인 관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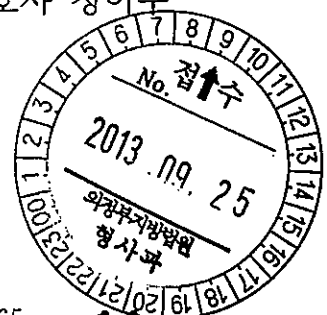
피고인 박 [redacted] (9 [redacted]), 19세  
 직업 무직, [redacted]  
 주거 경기 가평군 [redacted], 에이동  
 203호(가평읍, 맘모스빌라)

등록기준지 경기 가평군 [redacted]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 존속폭행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40조, 제37조, 제3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구속여부 2013. 09. 12. 구속(2013. 09. 09. 체포)

국선변호인 변호사 정이수



39호

## II. 공소사실

###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 14: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42-1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한 [REDACTED] 3층 휴게실에서, 위 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김○○(여, 24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박○○(여, 43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인터넷 포르노 음란물을 접하면서 자위를 하게 되었고 학창시절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돌려 문제를 만드는 등 성적집착이 심하였고, 실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 하던 중, 피해자인 친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자신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오목내길 16-14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인 [REDACTED]에서, 평소처럼 컴퓨터를 통하여 포르노 동영상을 보다가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16:00경 자신이 입원해 있던 [REDACTED]에서 퇴원

한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짚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0.부터 9. 9.경사이 [redacted]에서 외박을 나와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짚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모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오목내길 16-14 [redacted] 앞에서 피해자 박○○에게 살을 빼도록 주변 자라섬으로 운동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III. 첨부

1. 긴급체포서 1부
2. 구속영장(체포된피의자용) 1부
3. 국선번호인선정결정서 1부
4. 피의자수용증명 1부

